

종합기술제안서 심사기준 주요 변경사항

□ 개 요

- 고속도로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Eng. 과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고, 국토부의 변경된 기준 반영 등을 위해 심사기준 개정

구 분 (기술인 등급)	계	핵심전문가					일반전문가			
		사업 책임 (특급)	분야별 책임기술인			안전 총괄 (고급)	토질 참여 (초급)	안전전담		터널 (초급)
			도로 (고급)	토질 (고급)	구조 (고급)			(중급)	(초급)	
계양강화	21	1	1	1	1	1	1	7	7	2
제천영월	20	1	1	1	1	1	1	5	5	5
부산신항김해 등 2개 노선	21	1	1	1	1	1	1	6	6	4

※ 사업책임은 전문분야(도로, 토질, 구조) 중 1개 분야를 겸직하고, 평가시 사업책임 평가와 분야 책임 평가를 각각 수검해야 함

□ 주요 변경사항

① 핵심 및 일반전문가 구성 관련 변경

- (사업책임) 사업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(도로, 토질, 구조) 중 1개 분야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겸직하며,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시 효율적인 공동 참여사 관리를 위해 주관사 소속으로 제한
- (안전전담)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시 같은 공구 내 배치되는 안전전담기술인의 소속 건설Eng.社는 1개 회사로 제한

② 과업 특성에 맞춘 심사기준 변경

- 참여사간 용역 관리 능력 변별력 확보를 위해 「사업 수행방법」 세부 평가 항목 배점 조정*

*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배점 상향,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배점 하향 조정

심사항목		배점	
		국토부 기준	변경(안)
사업 수행 방법	9.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	5.0	10.0
	10.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	5.0	5.0
	11.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	10.0	5.0
계		20.0	20.0

③ 핵심전문가 정량평가 관련 심사기준 변경

○ 사업책임기술인 유사실적 양적평가

- (경력) 과업 수행범위 변경(분야별 책임기술인 겸직)으로 인해 경력인정 기술인 전문분야를 겸직 분야(도로, 토질·지질, 구조)로 제한
 - (기술자격) 기술인 등급은 특급, 인정자격분야*의 기술사 소지자
- * 기술사 인정 자격분야 : 도로 및 공항, 토질 및 기초, 지질 및 지반, 토목구조

○ 안전총괄기술인 유사실적 양적평가

- (경력)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총괄기술인의 경력인정 전문분야를 “건설안전”으로 제한
 - (기술자격) 기술인 등급은 고급 이상, 인정자격분야*의 기술사 우대
- * 기술사 인정 자격분야 : 건설안전기술사, 산업안전지도사

④ 가·감점 항목 신설 (국토부 기준 반영)

○ (가점) 참여기술인 中 젊은기술인 참여비율을 평가하여 가점 반영

참여비율	5%이상	3%이상	1%이상
가 점	1.0	0.8	0.6

* 제안서 제출시 가점 반영을 위한 젊은 기술인 증빙자료(경력증명서 등) 포함 제출

○ (감점)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관련 업체에 대한 감점 반영

사고 발생건수	3건 이상	2건	1건
감 점	- 0.5	- 0.3	- 0.1

- 국토부 사고조사결과 발표 시점으로부터 1년간 감점 조치되며, 귀책 여부를 사고조사결과보고서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감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석위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평가

⑤ 종합기술제안서 및 업무중첩도 평가대상 기준 변경

- (변경사유) 공정률에 따른 기술인 투입으로 투입 시기 특정이 어려워 참여업체들의 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
- (제안서평가) 당초 참여기술인 전체 → 변경 핵심전문가만 평가*
- * 일반전문가는 정량 및 정성평가 대상에서 제외
- (업무중첩도) '27년 배치 예정인 핵심 및 일반 전문가*만 확인
- * '28년 이후 배치 예정인 기술인은 업무중첩도를 “실배치일” 기준으로 평가